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기의결

안 건 번 호 제2023-001-002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의결연월일 2023. 1. 11.

주 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Ⅰ. 기초 사실

맞춤 운동 추천, 식단·운동기록의 1:1 코칭 서비스 등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2. 28.)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4. 27. ~ 11. 2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맞춤 운동 추천 및 코칭(P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웹·앱을 운영하면서 '22.5.24. 기준으로 이용자 933,829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 정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법정대리인정보,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기록(채팅 메시지), 가입경로, 결제정보 (선택) 직업, 고객 문의 정보		
	합 계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13:11		이용자 A씨가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유출 [*] 과 관련된 문의 글 작성 * 피심인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메일로 수신함		
'22. 2. 28.	14:00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및 유출 내용·범위 파악		
	19:10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15:53	A씨에게 수신한 메일(엑셀 파일) 삭제 조치 요청		
'22. 2. 28.	20:00~	게이저님기 이것만 이유지 모셔에게 된혀 만 메이크 이것 나서 토지		
'22. 3. 1.	11:02	·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 51명에게 전화 및 메일로 유출 사실 통지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51명의 이름, 아이디, 고객센터 문의·답변* 내용 * 환불·취소 등 결제, 이용권 구매, 코치 선택 등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답변이 대다수

(유출 경위) 피심인은 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을 위해 정기적 (2~3일)으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엑셀)과 운영 중인 코칭(PT)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이용자의 1:1 코칭내역 파일(엑셀)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하여, 상담 직원이 1:1 코칭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이메일로 잘못 첨부·발송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고객센터 문의·답변 내역'과 '********** 1:1 코칭 내역' 파일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폴더명: 다운로드)에 일괄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11. 29.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2.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1-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활용(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고객센터 문의·답변 내역 파일'과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1:1 코칭내역 파일'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일괄 저장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운영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안전조치의무	보호법	§48의2①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위반	§29	제2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고시§4⑨)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보호법」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번 제75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안전조치의무 위반 (접근통제)	600만 원	-	300만원	300만원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1월 11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